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18. 12. 13.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년 11월 13일

나. 발 의 자 : 이규선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 2018년 11월 20일

라. 상정일자 :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건설위원회(2018. 12. 12.)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규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지하수 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규정(안 제4조)
-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및 보전구역의 관리 규정(안 제5조~제6조)
-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안 제8조~제11조)
- 이용 종료된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규정(안 제12조)
- 지하수관측정 설치운영 규정(안 제1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인재)

-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조례안으로 총 1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신청자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보전구역 관리를 위하여 위반 행위나 지하수 오염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7조에서는 수질검사 부적합 통보를 받은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였고

- 안 제8조~제11조까지는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자문을 위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3조에서는 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고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관측하도록 규정함.

○ 2018년 12월 현재 영등포구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하수는 신고 119개소, 허가 33개소로 총 152개소 지하수가 관리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영세업종으로 오래전에 개발되어 이용 중에 있음.

○ 본 조례안은 1994. 12. 10 제정된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지자체에 위임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 지하수 보전구역 관리 및 수질보전 등을 위한 조치와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구민의 건강 증진 등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지자체에 위임된 지하수 개발 이용부담금 부과는 기존 지하수 개발 이용자 중 현재 민생경제 어려움에 따른 부담금에 부담을 느껴 민원 제기 및 그에 따라 폐공 신고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전쟁 등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급수용 시설로 이용되는 지하수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지하수 개발 이용부담금 부과는 집행부 주관과인 환경과와의 협의과정에서 보류한 것으로 판단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
----------	----

발의년월일 : 2018년 11 월 일

발 의 자 : 이규선 의원 외 3명

## 1. 제안이유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우리구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지하수의 조사 규정(안 제3조)
- 다.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 규정(안 제4조)
- 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및 보전구역의 관리 규정(안 제5조~제6조)

마.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안 제8조~제11조)

바. 이용 종료된 지하수 관정 원상복구 규정(안 제12조)

사. 지하수관측정 설치운영 규정(안 제13조)

### **3. 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예산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8. 11. 14. ~ 11. 20.):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6. “원상복구”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의 조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조사의 범위·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지형 및 지하 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기타 지하수의 부존 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구청장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공고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20조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내용
  2. 지하수 보전구역안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하수 수질의 주요 항목별 측정치
  3. 그 밖에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 사항
- ② 지하수 개발·이용자, 그 밖의 이해 관계자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

정·변경·해제 요청을 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그 타당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요청하고 그 처리내용을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하수보전구역의 관리)** ① 구청장은 지하수보전구역을 수시로 점검하여 같은 구역안에서 법 제13조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당 보전구역의 도로변이나 출입이 빈번한 곳에 보전구역 지정안내판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보전구역 관리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수질검사 부적합 조치)** 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⑧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원상복구)** ①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이용 종료된 지하수 관정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하수 관정을 원상복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서에 따른 원상복구계획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계획에는 복구할 관정의 개발·이용자 또는 소유자, 폐공발생위치, 사유, 처리자, 복구일자 및 복구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 종료에 따른 원상복구계획을 통보 받은 때에는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원상복구업체, 공사사진 등 원상복구에 관한 서류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영 제24조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지하수관측정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장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징수)** 영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